『소방기술자』실무교육(선임자) 안내





(Ver 24,1)

구 분		주 요 내 용					
근거 법령		• 소방시설공사업법					
시행 근거		• 법 제29조(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) • 시행규칙 제26조(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) 내지 제27조(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)					
	과정명	• 소방기술자 실무					
	교육 대상	• 소방시설업 기술인력 •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					
		관련 근거 : 법 제29조제1항					
		제29조(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) ① 화재 예방, 안전관리의 효율화,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					
		• 2년에 1회 교육시행					
교육 안내	교육 주기	관련 근거: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(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)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 다만,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·인정 교육훈련 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					
	교육 과정	• 교육과정 등					
		교육과정	교육형태	교육시간		교육 장소	
		집합과정	소집교육	소집 4시	간	시도지누	부 지정교육장
		※ 근거: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2조(실무교육 등) • 교육대상 및 내용					
		구분 설계(: (업종)	기본) 설기	볚(심화)	김	남리(기본)	감리(심화)
		교육 소방시설 설 대상	계업의 기술인력으로	등록된 사람	소방시설	설 감리업의 기술	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
		• 소방관계본 • 자동회재탐지 교육 문제점 및 가 내용 • 가스계소화설 문제점 및 개 • 소방설비 설가	설비 설계의 • 자동화재(선방안 문제점 및 비 설계의 • 가스계소	당지설비 설계의 ! 개선방안 화설비 설계의 ! 개선방안	자동화자 문제점가스계소 문제점	관계법령 대탐지설비 감리의 및 개선방안 소화설비 감리의 및 개선방안 네 감리업무 절치서	소방 관계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감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스계소화설비 감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방사설업 행정과 질의하신

실무(선임자) 교육 소방기술자

	구분 (업종) 공사(기본) 공사(심화) 관리							
	교육 대상 소방시설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사람 사람	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						
	- 소방관계법령 -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의 - 소방관계법령 -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의 - 문제점 및 개선방안 - 가스계소화설비 공사의 - 문제점 및 개선방안 - 소방설비 공사업무 절차서 - 소방사설업 행정과 질의회신 - 소방사설업 행정과 질의회신							
	•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- 교육안내문 우편발송(시도지부별 일정에 따라 교육일 10일전까지 발송) - 안전원사이트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신청(사전접수)							
교육 흐름도	1 교육과정 및 일 정·장소 선택 2 설위교육 회비(교육비원부 접수완료 전수완료 (집합교육 미수)							
교육 일정	• 안전원 홈페이지(www.kfsi.or.kr) 실무교육 일정참고							
교육 참가시 구비 서류	• 집합교육 : 신분증, 선임된 자격수첩(국가기술자격증, 기술인정자격수첩 등) • 사이버교육 : 해당사항 없음 ※ 교육전 선임신고 필수							
•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시설 • 건축, 배관공학, 전기회로 등 관련법규·이론 • 소방시설의 설계·공사·감리·점검 •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질의회신사항 • 소방행정과 정책방향 • 소방신기술동향과 문제점 등								
실무교육 수수료	 ※ 근거: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고시 제2조(실무교육 등) • 55,000원 ※ 근거: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고시 제4조(실무교육비 등) ★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							
실무 교육 이수증 발급	육							

•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

□ 교육이수시 까지 소방시설업,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음

교육 미이수자 행정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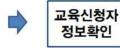
관련 근거 : 법 제29조제2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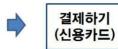
제29조(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)

②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 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 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❖ 신용카드 결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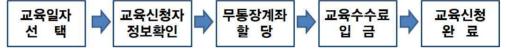






교육신청 완 료

❖ 무통장 계좌 입금



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

※ 주의사항

- 1. 입금기한 :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(근무일 기준)후 오후 6시까지 (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.)
- 2.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**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,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**하시기 바랍니다.
- 3.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- 4.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http://www.kfsi.or.kr접속>소방안전교육>실무교육>실무교육 신청 내역
- 5. 신용(체크)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~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

교육수수료 환불

환불기준	환불금액	
교육종료 전까지 신청	전액	
과오납한 경우	과오납 금액	
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	전액	
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	전액	
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	없음	

• 환불시 주의사항

- 1.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.
- 2. 교육 신청 후 불참 시,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·변경·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(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)
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(평일), 주말·공휴일 제외
- 지부별 연락처

지부별 연락처

지부(지역)	연락처	지부(지역)	연락처	
서울지부 (서울 영등포)	02-850-1378	경기지부 (수원 팔달구)	031-257-0131	
서울동부지부 (서울 동대문)	02-850-1392	경기북부지부 (경기 파주시)	031-945-3118	
부산지부 (부산 금정구)	051-553-8423	강원지부 (강원 횡성군)	033-345-2119	
대구경북지부 (대구 중구)	053-431-2393	충북지부 (청주 흥덕구)	043-237-3119	
인천지부 (인천 서구)	032-569-1971	전북지부 (전북 완주군)	063-212-8315	
광주전남지부 (광주 광산구)	062-942-6679	경남지부 (경남 창원시)	055-237-2071	
대전충남지부 (대전 대덕구)			004 750 0047	
울산지부 (울산 남구)	052-256-9011	제주지부 (제주 제주시)	064-758-8047	